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공보담당관 이준호
전화 02-530-4154 / 팩스 0502-193-1199

보도자료
2024. 6. 19.(수)

제목

「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한
경복궁 낙서 사건」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조영희)는 금일(6. 19.) 영화 등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A○○이 사이트 방문자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 등 3곳에 낙서를 하게 한 사건에서,
 - A○○을 구속 기소하고, 낙서에 관여한 고등학생 B○○, C○○ 및 위 사이트 운영 경비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제해 주는 등 A○○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D○○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A○○은 자신이 주범이 아니며,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'김실장'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였으나, 검찰은 송치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'김실장'은 실체가 없으며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은 A○○임을 확인 하였습니다.

- 또한 검찰은 A○○이 약 5개월 간 영화, 드라마 등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사실 및 경찰 구속 조사 중 도주한 사실로도 A○○을 기소하였습니다.
- 본건은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로,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아울러 검찰은 A○○ 등에 대한 문화재 복구 비용(1억 3,100만 원 상당)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지원하고, A○○ 일당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약

성명	공소사실 요약	처분
A〇〇 (30세), B〇〇 (17세)	<p>▶ A〇〇, B〇〇의 공동범행</p> <p>- A〇〇, B〇〇는 공모하여(A〇〇는 범행 기획 후 D〇〇를 통하여 비용 10만 원을 B〇〇에게 송금하고 범행 지시, B〇〇은 낙서 실행), '23. 12. 16.경 문화재인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"ㄱ TV" 등 문구를 써 훼손하고, 공용 물건인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"ㄱ 티. com" 등 문구를 써 훼손 [문화재보호법위반, 공용물건손상]</p> <p>▶ A〇〇의 단독범행</p> <p>- '23. 10. ~ '24. 5. 'ㄱ TV', 'ㄴ TV', 'ㄷ 존', 'ㄹ 존' 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,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(2,368개), 음란물(931개), 불법촬영물(9개)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(2개)을 배포 [저작권법위반, 정보통신망법위반(음란물유포), 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배포 등), 아동·청소년성보호법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 등)]</p> <p>- '24. 5. 28. 구속되어 서울청 조사를 받던 중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울청사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 [도주]</p>	A〇〇 구속 기소, B〇〇 불구속 기소
C〇〇 (여, 16세)	<p>▶ 위 A〇〇, B〇〇의 공동범행에 대해 그 범행 계획을 알고 B〇〇의 범행 도구 구매 현장, B〇〇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,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 [문화재보호법위반방조, 공용물건손상방조]</p>	불구속 기소
D〇〇 (19세)	<p>▶ D〇〇는 A〇〇이 '23. 10. ~ '24. 1. 'ㄱ TV'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(1,538개)을 배포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 경비를 D〇〇의페이팔 계정을 통해 결제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 [저작권법위반방조]</p>	불구속 기소

II

주요 수사 진행경과

- '24. 5. 31. 우리청, 구속 송치 기록 접수(송치관서 : 서울경찰청)
- ~ 6. 17. 피의자 A○○ 3회 조사, 피의자 D○○ 조사, 참고인 E○○, F○○ 등 관련자 조사,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등 보강 수사 진행
- '24. 6. 19. A○○ 구속 기소, B○○, C○○, D○○ 각 불구속 기소

III

이 사건 수사의 의의

1 A○○이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임을 명확히 규명

- A○○은 당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'김실장'이 경복궁 낙서를 주도하고 영상공유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, 자신은 '김실장'의 지시에 따라 B○○, C○○가 경복궁 낙서하는 현장에 가서 망을 보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보조 역할만 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.
- 그러나 검찰에서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하여, ▲A○○이 'ㄱ TV'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경복궁 낙서 범행 계획을 수립한 사실, ▲경복궁 낙서 직전에 F○○에게도 20만 원을 주고 세종대왕상, 승례문에도 낙서를 사주했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, A○○이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지목한 일명 '김실장'은 실체가 없으며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은 A○○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- 특히 중요 참고인 F○○은 경찰 출석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으나,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, 텔레그램을 통해 F○○을 찾아내 그가 '김실장'이 아닌 A○○으로부터 낙서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는 주요 진술을 보강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
② 범행 동기인 광고 수익의 특징을 위한 수사 계속

-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분석 결과, A○○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A○○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의 광고 배너 1개 당 1개월 게시 단가를 200만 원에서 1,000만 원 사이로 안내하고, 이를 '23. 10.~'24. 1. 및 '24. 3.~'24. 5.까지 약 5개월 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기록상 확인된 배너 광고 게시 숫자만 하더라도 4개 사이트에 39개이고, 광고 거래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으로 확인되는 광고 수익만 1억 원 이상에 이르며, 이러한 수익 산정은 현존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A○○가 실제 거둔 수익은 최소 1억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
※ 실제로 A○○은 종업원 E○○에게 “한 달에 1억 원이 입금된다”고 얘기하며 수익을 과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([별첨] 텔레그램 대화 내용 참조).
- 검찰은 불법 광고 수익과 관련된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, 경찰도 A○○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은닉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 진행 중입니다.

IV 향후 계획

- 본건은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로, 검찰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아울러 검찰은 A○○ 등을 상대로 한 문화재 복구 비용(1억 3,100만 원 상당)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A○○ 일당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▣

[별첨] AOO와 종업원 EOO 사이 텔레그램 대화

